

2024년도 「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사업」 지원 대상 통합 모집 공고

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「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중소·벤처기업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3월 8일
해양수산부장관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(예비)창업자와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

□ 지원 분야

-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 제12조(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)에 따른 해양수산 쏠 기술 분야* 지원

* 해양자원, 해양환경, 해양수산생명, 해양관측 및 예보, 해양공학(해양플랜트, 선박공학, 레저·탐사장비), 해양재해/방재, 해안/항만물류, 해양안전/교통, 극지 해양과학, 수산양식, 수산자원/어장환경, 어업생산/이용가공, 해양수산연구인프라

□ 사업 내용

사업명	프로그램	지원내용	지원대상	접수기간	페이지
해양 신산업 인큐 베이팅 지원	①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	엑셀러레이터(창업기획자)를 통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보육 실시	(수행기관) 엑셀러레이터 (보육기업)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	3/8(금)~ 3/21(목) 별도 모집공고 (4월 예정)	p3
	②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	시제품 제작, 연구개발, 제품홍보 비용 등 지원 및 마케팅·홍보, 판로개척 컨설팅	창업 7년 이내 기업 * 예비오션스타의 경우, 업력제한 없음	별도 모집공고 (4월 예정)	p11
투자 희망 기업 지원	③해양수산 투자 활성화	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한 투자기회 제공	창업·중소·벤처기업	별도 안내	p17
	④투자유치 컨설팅 지원	투자실무, 자금조달 전략, 사업계획서 작성, IR 컨설팅, 투자상담회, 팸투어 운영	창업·중소·벤처기업	별도 모집공고 (4월 예정)	p19

*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별도 모집공고 예정

** 1년 내 최대 2개 프로그램 수혜가능(단, 신청은 제한 없음)

*** 3년 내 최대 1회 동일 프로그램 수혜가능

(예시) '22년 사업화자금 수혜기업은 '24년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불가

**** 단, 유망 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투자 활성화 사업의
경우 중복 지원 여부 별도 결정 가능

II. 프로그램별 세부내용

1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

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(수행기관) 운영 지원으로 유망 창업기업(보육기업) 발굴,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

□ 프로그램 개요

- (지원 내용)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지원
 - (액셀러레이터)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을 위한 운영 자금 지원

< 액셀러레이터 지원항목 >

- (인건비) 참여 인력 인건비 지원
- (운영비) 유망기업 모집·선발, 교육·훈련, 멘토링, 자금지원, 투자IR 등 운영비
- (역량강화비) 해양수산 관련 특화 교육, 네트워크 구축, 기관 간 협업 등

- (창업기업) 초기자금, 교육·멘토링, 투자연계 등 창업 초기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

*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지원내용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

< 창업기업 지원항목 >

- (자금지원) 기업별 초기 자금 지원
- (기업보육) 기업별 멘토링, 투자자매칭, 사업화 지원 등
- (투자유치) 액셀러레이터 직접투자 또는 연계투자 지원

○ (지원규모)

- (액셀러레이터) 6개사, 기관별 약 2억 6천만원 이내 지원(일반 4개사 2.6억, 로컬특화 2개사 2.2억 총 14억 8천만원 지원)

- (창업기업)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 총 48개 이상

* 액셀러레이터 지원 금액 및 지원 창업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

□ 프로그램 운영

- (엑셀러레이터 선발)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, 보육, 투자유치 지원을 수행할 6개사 선발(일반 4개사 2.6억, 로컬특화 2개사 2.2억)

< 선발기준 >	
- (선정절차)	자격검토(KIMST)→서류평가(평가위원회)→발표평가(평가위원회) * 서류평가에서 2배수 선정, 단, 신청 건이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
- (가점)	'24년 중기부 TIPS(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 운영 사 해당 시 가점 2점 부여
- (선정우대)	'23년 최종평가 1순위 엑셀러레이터는 동 사업 신청 시, 별도 평가 없이 우선 선발
- (로컬특화)	로컬 특화 엑셀러레이터*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지를 둔 엑셀러레이터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유관기관, 지자체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'주관기관-협력기관' 구조로 사업에 참여가능 * 최초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사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기업

- (기업선발) 엑셀러레이터가 해양수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모집 및 선발(해양수산 신산업 5개 분야 중점 선발)

*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(기술) : 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
- (선발 규모) 총 48개 팀 이상(엑셀러레이터별 8개팀 이상)

< 선발기준 >		
- (의무선발)	예비창업자 2개팀,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기업(3년 이하) 70% 이상, 청년기업 4개사 이상 의무 선발(로컬특화의 경우, 지역 소재 (예비)창업기업(본사, 지사 포함) 선정 필수) * 초기 창업기업 :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** 청년기업: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인 기업	
- (선발방식)	서류평가(3배수) 및 발표평가를 통한 2단계 평가를 통해 선발 단, 엑셀러레이터(AC)의 발굴 능력 활용을 위해 AC사별 추천 1개 사는 서류평가 면제 최종선정은 전담기관 검토 후 확정	
- (가점사항)	가점항목에 따라 발표평가(최종 선정평가)에서 가점 부여	
가점 규모	가점 항목	입력기준
5점	◦ 「에비 오션스타」 선정('21~'23)	합산하여 최대 10점 이내 부여
3점	◦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1~'23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	
1점 최대 2점	◦ '23년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우수성과 ◦ '22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 ◦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	

* 평가 기준은 엑셀러레이터 내부 기준을 따르되, 최종선정은 전담기관 확정 필요

** 기업모집은 해양수산창업투자시스템을 통해 AC가 별도 공고(4월 예정)

- (기업지원)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별 성과지표(KPI)*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** 설계 및 운영

- * (성과지표) 예비창업자 신규창업, 고용, 투자유치, 만족도 점수 등
- ** (보육프로그램) 교육/멘토링, 전문가 자문, 투자유치 지원, 판로지원 등
- (초기자금 지원) 액셀러레이터는 선정기업과 협약체결 후, 90일 이내에 8천만원 이상(로컬특화의 경우 6천만원 이상)을 초기자금으로 지급
- * 기업별 차등 지급 가능(단, 지급액 상한 15백만원), AC의 직접·지분·연계투자와는 별도로 진행함
- ** AC는 초기자금 사용기준에 따라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관리·감독함
- (기업보육) 교육·멘토링, 시장검증, 판로지원 등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특화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- * 보육대상 기업 중 해외진출·수출 희망 기업이 있을 경우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가능(단,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교부는 없음)
- (직접투자) 액셀러레이터 자체자금으로 선발기업에게 직접 투자
- * 액셀러레이터별 총 100백만원 이상을 선발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(미이행 시 해당 금액을 사업비에서 환수), 사업종료 전까지 투자계약날인 필수
- (투자연계) IR 컨설팅,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
- * 보육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 별 데모데이 1회, 통합 데모데이 1회 이상 개최
- (사후관리) 보육기업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지원, 사업 종료 후 2년 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요구자료 제출
- * 보육기업 사후관리 후, 차년도 상반기에 전담기관에게 결과를 보고함
- **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2년간 사업성과 기초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- (창업설명회) 해양수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
- 초청강연, 창업 토크쇼, 창업상담 등 제공하여 해양수산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,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장 마련
- * 수행기관은 설명회 홍보 및 참석자 모집 등 협업 지원하고, 행사 초청 시 참여 협조
- (공동협업)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
- 창업 관련 행사(창업설명회·상담회, 간담회 등) 지원, 투자유망 기업 발굴 지원,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교육 필수 참여 및 이수* 등
- * 수행기관별 최소 3명 이상의 인력(사업 참여인력 중) 교육이수 필수

- (사업수행 실적보고) 전담기관 요청에 따라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수행내용 및 실적 보고

* 점검회의 개최 시, 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석 원칙

- (최종평가) 수행기관 성과목표 달성도, 기업보육 내용, 기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, 전담기관 간의 소통·협업능력 등을 평가

* 평가결과 1위 액셀러레이터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, 별도 평가 없이 우선 선발

** 최종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, 심의를 통해 사업비 잔액 미지급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

□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전문 육성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

-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
- ②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(공동)대표여야 함
- ③ 상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* (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지정)
 - 수행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경력 3년 이상 필수
 - 실무담당자는 액셀러레이팅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사업참여율 50% 이상 필수
 - 타 사업 등으로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사업 수행 및 전담기관 간 협조 등이 원활하지 않을 시, 전담기관은 수행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등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
- ④ 자체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10개 이상 창업기업 투자 경험 필수
- ⑤ 해양수산분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·외 해양수산 유관 기관, 전문 VC, 협력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
- ⑥ 실무경험을 보유한 벤처창업 관련 전문가, 투자자 등의 멘토단 구성 필요
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 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○ (평가기준) 사업 목적 및 신산업분야 이해도, 프로그램 구성 등을 평가

평가항목		세부 평가기준	배점(점)
서류평가	수행기관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무상태 안정성 및 인력구성 적절성 엑셀러레이팅 실적 및 보육공간·네트워크 우수성 	35
	프로그램 수행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망기업 모집·발굴·선정 계획의 구체성 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발굴 계획 엑셀러레이터 성과지표의 타당성, 적합성, 현실성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, 적합성 	50
	역량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의 타당성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성 	15
	합계		100
평가항목		세부 평가기준	배점(점)
발표평가	수행기관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직/참여인력(보유자격) 구성 등 조직·인력구성 적절성 보육·투자 실적 등 엑셀러레이터 수행 성과 우수성 보유 인프라 및 전문가·멘토 명단 구성의 전문성 로컬 엑셀러레이터의 경우, 지역 소재 협력기관(유관기관 및 지자체)과의 협력성 	30
	발굴 및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중심의 예비창업자·창업기업 홍보·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보육대상 기업 선정 계획의 적합성 및 공정성 예비창업자 지원 수 로컬 엑셀러레이터는 지역 소재 (예비)창업기업(본사, 지사 포함) 선정 필수 여부 	30
	프로그램 수행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엑셀러레이터 성과지표의 도전성, 적합성 - 보육 기업 수, 초기투자 및 후속투자 관련 지표 등 평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우수성 창업기업 교육·멘토링 계획의 구체성 및 기업 만족도 제고 방안의 타당성 창업교육 · 전담멘토링· 기타 프로그램 운영계획 	20
	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발기업에 직접 투자 금액 최소 1억원 이상 선발기업에 후속 투자 금액 최소 3천만원 이상 ※ 직접 투자의 경우, 사업종료 전까지 투자계약날인 필수 	10
	성과관리 및 일반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과관리 계획(후속 투자유치 계획 포함)의 적정성 - 창업기업 수,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유치, 지식재산권 확보 - 초기투자 계획 및 후속투자 연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 일정, 산출물, 재무,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- 공간, 초기자금 매칭, 전체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- 사후관리 및 향후 연계 계획의 타당성 	10
	합계		100

○ (가점사항) '24년 중기부 TIPS 운영사가 엑셀러레이터 수행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2점 부여

□ 추진절차

구 분	시행주체	세 부 내 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엑셀러레이터 모집공고 및 선정 (3월~4월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담기관 (평가위원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엑셀러레이터 선정 - 서류평가(2배수 선정), 발표평가를 통한 엑셀러레이터 선정 * 신청 건이 3배수 이하일 경우, 서류평가 생략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업 모집공고 및 선발(4~5월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행기관 /전담기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엑셀러레이터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발(8개 팀 이상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프로그램 운영 (5월~10월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행기관 /전담기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• 창업설명회 개최(1회 이상) • 월별 사업수행 내용 및 실적 점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데모데이 (10~11월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담기관 /수행기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육기업 IR 및 투자검토 등 투자활동 지원 • 엑셀러레이터, 보육기업, 전담기관 및 외부 전문가 간 교류의 장 마련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최종평가(12월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담기관 (평가위원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최종평가 실시 -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주요 성과보고 * 평가결과 1순위 엑셀러레이터 차년도 우선 선발 적용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협약서 기재사항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창업기업 모집 및 선발은 수행기관(엑셀러레이터) 내부기준에 따르되, 평가계획과 선정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전담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초기자금지원(사업비)과는 별도로 보육기업에게 총 10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해야 하며, 투자 의무금액 미달성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환수 조치함

- 초기자금지원금(8천만원이상, 로컬특화의 경우 6천만원 이상)을 미지원하거나, 지원받은 기업의 중도 포기 발생 시, 해당 금액은 불인정되며, 최종 사업지원금에서 환수 조치함
 - * 단, 중도 포기로 인한 기업 추가 선정 시 해당 기업에 한하여 협약 종료 20일 전까지 집행 가능
- 선발된 예비창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(혹은 법인설립)을 했거나, 창업기업(또는 예비창업자)이 타인의 아이템 또는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,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스타트업 및 해당 수행기관에 있음
- 선발 후, 중도 포기 기업이나 선정이 취소된 기업이 발생할 경우,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,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 대상을 충원하여야 함
 - * 발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육기업을 충원하며, 적절한 기업을 충원하지 못할 시, 서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충원
-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80%를 지급하며, 최종평가 후 나머지 20%를 지급, 최종평가 결과*에 따라 잔액(사업비의 20%) 지급 여부가 결정
 - *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심의를 통해 잔액 미지급 및 사업비 환수 가능
-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예산운용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후 집행 가능
- 로컬 특화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협약 및 총 사업비 관리·집행 모두 주관기관에서 일괄 수행(협력 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)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김설아 팀장	02-3460-0371	ksa519@kimst.re.kr

2

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

□ 프로그램 목적

-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효과 도모를 위한 수출지원, 시제품 제작, 상품화·홍보 등 수요기업 맞춤형 예산 및 컨설팅 지원

□ 프로그램 내용

- (지원 규모) 총 33개* 내외, 총 9.9억원(기업당 3천만원)

* 수출기업 집중지원 3개社 이상 선발,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 기업 우선 배정(5개社 내), 대·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기업 지원 우선 배정(5개社 내, 별도 공고 예정)

** 정부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부담 면제 유지

- (지원 내용)

- 사업화 자금지원: 시제품 제작, 연구개발, 제품 검증, 제품·서비스 및 기업 홍보, 수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<일반>

구 분	지원 내용	비고
시제품 제작	◦ 재료비,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, 위탁 제작 등	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*선정 후 안내
연구개발	◦ 시장조사, 기술개발 등	
제품 검증	◦ 시험·분석, 상표·특허 획득, 인증 등	
기업 홍보	◦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제작 등	
박람회 참가	◦ 국내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	

<수출>

구 분	지원 내용	비고
해외홍보	◦ 해외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 등(여비 불가)	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*선정 후 안내
바이어 발굴	◦ 바이어 매칭, 관련 컨설팅 등	
수출사업화 지원	◦ 관세, 물류지원, 포장지원	

- 사업화 컨설팅 지원: 국·내외 홍보·마케팅 또는 판로개척 컨설팅 제공

구 분	컨설팅 지원 항목	
	국내 사업화 컨설팅 지원항목	해외 사업화 컨설팅 지원항목
홍보· 마케팅 컨설팅	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 ② 온라인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③ 디자인·브랜드(BI/CI 등) 개발 컨설팅 ④ 기타	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(글로벌/국가별) ② 지적재산권(국제상표, 특허 등) 출원 지원 ③ 해외 온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(수출검사, 서류대행 등)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⑥ 기타
판로개척 컨설팅	① 시장조사 및 분석 ② 공공판로 ③ 유통채널 ④ B2C, B2B 판매전략 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MOU체결 등) ⑥ 국내박람회·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	① 해외 POC(시장조사분석, 글로벌마켓 테스트 등)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③ 해외수출유통채널(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) ④ 해외 인·허가/인증(ESG, 비건 인증 등)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MOU체결 등) ⑥ 해외박람회·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

※ 컨설팅 지원 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(성과목표) 업력별 성과 목표 제시 필요

- (초기기업)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목표 제시

* 필요 시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 제시

- (성장기업)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,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목표는 선택적 제시

- (수출기업) 5천만원 이상 수출액 목표 제시

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○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

* 접수 마감일 기준,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(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)

** 업력 기준으로 초기기업(3년 미만) 및 성장기업(3년 이상~7년이하)으로 구분

*** 예비오션스타의 경우 업력제한 없음

**** 수출기업은 창업 성장기업으로 직전년도 수출액 3천만원 이상 기업 대상

○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창업 성장기업의 경우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별도 모집공고(4월 예정)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- * **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**
 - **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속 권고
- (신청서류) 별첨2 참고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①	지원신청서(별첨2 참고) (직인 날인 필수)	필수 제출
②	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	필수 제출
③	최근년도('22~'23년) 결산 재무제표(성장기업, 수출기업에 한함) 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3년 재무제표 제출	필수 제출
④	직전년도('23년)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)	수출기업 필수 제출
⑤	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, 인증 서류 등	해당 시 제출

- 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기준

- (수행기관 선정)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 업체 또는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협·단체 또는 컨설팅 수행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선정
- (기업 선정) 사전검토, 서류평가,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(해양수산 신산업 5개 분야 중점 선발)
 - *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(기술): 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- (사전검토)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
 - * ①접수 후 신청서류 여부확인 ②서류평가 후 세부자격요건, 제외대상 검토
 - ** ①신청서류 미제출, ②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 조치하며, 후순위 기업 선정함(기타 특이사항은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)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15배수) 선정
 - * 지원 대상기업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
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

<서류/발표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
-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영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 ■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,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 * (수출기업의 경우) 글로벌 관계자 대상으로 소통, 홍보 등 진행 가능한 자료 등의 준비 완성도 	20
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 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	30
시장성 및 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목표시장 규모,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 ■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* (수출기업의 경우) 수출국가, 전시회/전시시장의 특성과 아이템과의 적합도 	40
사업비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	10

※ 대·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기업 지원의 경우,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

- (운영위원회) 발표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사업 준비단계, 사업 실행단계 분야별 수혜기업 선정
 - * 운영위원회: 부처사업담당관 1명과 관련 전문가 4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
- (오리엔테이션/현장진단) 선정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등을 통해 필요 컨설팅 내용 확정 및 컨설턴트 매칭(필요 시 현장방문)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발표평가(최종 선정평가)에서 가점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	입력기준
5점	◦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('21~'23)	합산하여 최대 10점 이내 부여
3점	◦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1~'23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	
1점 최대 2점	◦ '23년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우수성과 ◦ '22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 ◦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	

□ 추진절차

구 분	시행주체	세 부 내 용
수행기관 선정 (3월~4월)	전담기관	• 수행기관 선정(조달청 제한경쟁 입찰)
기업선정 (4월~5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 (평가위원회)	• 접수 사전검토, 서류평가, 발표평가, 운영위원회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
↓		
결과통보 및 협약 (4월~5월)	전담기관 수혜기업	• 기업선정 결과 통보 • 협약 체결 및 선정간담회 개최 * 사업 수행기간: 7개월
↓		
중간모니터링 (8~10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	• 진행사항 파악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-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석
↓		
결과보고서 제출 (11월~12월)	수혜기업	• 결과보고서 및 성과자료(증빙포함) 제출
↓		
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(12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 (평가위원회)	•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•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정부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전액 선지급
 - ※ 사업비는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 완료한 건에 대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에 등록
-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(국내 사업화)/수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, 사업 신청서 접수 시, 택 1(변경 불가)
- 일반/수출 분야별 해당 지원 항목에 한하여 자금 집행 가능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이지현 선임연구원	02-3460-0372	jihyeon@kimst.re.kr

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,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투자 성과 창출

*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운영, 해양수산 투자동향 분석, 투자유치 실적조사·통계, 투자협약 체결식, 투자심사역 양성 추진

□ 프로그램 내용

- (기업 IR) 해양·수산펀드 운용사 등 해양수산 분야 투자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IR 기회 제공

- (신청자격)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·중소·벤처기업

- (신청방법) 공고를 통한 기업 모집이 아닌 발굴 및 추천방식으로 운영

- (투자심사역 양성과정) 해양수산 정책, 기술, 산업 특성 등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 전문 투자심사역 양성(연 1회)

*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사, AC, VC 대상 운영

□ 지원대상 선정 절차

- (수행기관 선정)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기관(업체 또는 컨설턴트)을 보유하고 있는 협·단체 또는 컨설팅 수행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선정

- (기업 IR) 투자가능성, IR 준비도 등을 고려한 기업선정

- (투자심사역 양성과정) 교육 희망자 모집(홈페이지, 메일) 및 교육 실시

□ 추진절차

구 분	시행주체	세 부 내 용
수행기관 선정 (3월~4월)	전담기관	• 수행기관 선정(조달청 제한경쟁 입찰)
↓		
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(4월~12월)	수행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의회 정기IR 개최(연 4회) • 투자심사역 양성 교육(연 1회) • 해양수산 투자동향 분석 및 실적통계 • 해양수산 투자협약 체결식(연 1회) • 투자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자 연계 등
↓		
최종보고회 (12월)	수행기관/ 전담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자 활성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- 사업 추진결과, 투자실적, 사업 개선사항 등 보고(수행기관)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이지현 선임연구원	02-3460-0372	jihyeon@kimst.re.kr

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중소·벤처기업의 경영, 재무,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

□ 프로그램 내용

<투자유치 컨설팅>

- (지원 규모) 총 7개 기업
- (지원 내용) 기업진단, 투자유치 기본교육 실시, 자금조달 설계, 재무 분석, IR자료 작성 컨설팅, 투자사 매칭 및 IR 실시 지원 등

< 지원 항목 >

○ 투자유치 컨설팅

- (기본교육) 투자의 이해, 투자 실무,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등
- (기업진단) 기업현황, 사업계획, 성장로드맵, 투자 가능성 등 종합 진단
- (맞춤형 IR전략) 투자 컨설팅 모듈에 따라 진행(사업화전략, 재무분석 및 전략, 자금조달설계, 재무추정 및 기업가치평가, 사업계획서 및 IR자료 작성 등)
- (투자자 발굴·매칭 및 IR) 벤처투자자 대상 IR 및 피드백, 국내외 잠재 투자 기관 개별 접촉 및 투자 상담 매칭
- (사후관리) 투자자 상담결과 안내, 투자계약 지원

※ 컨설팅 지원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<기업현장 방문행사(팸투어)>

- (지원 규모) 2개 권역별 4개사 내외(8개 사 내외)
- (지원 내용) 투자자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, 사업장 규모, 제조설비, 보유인력 등을 파악하는 현장 방문형 투자검토

<수시 투자 상담회>

- (지원 규모) 회차별 3개사 내외(5회 진행 예정)
- (지원 내용) 투자유치 시점을 고려한 투자자 대상 수시 IR 진행 및 기업-투자자 간 1:1 밀착 상담

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(신청자격)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·중소·벤처기업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□ 신청방법

<투자유치 컨설팅>

- (신청기간) 별도 모집공고(4월 예정)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
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- * **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**
 - **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할 것을 권고

○ (신청서류) 별첨3 참고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①	지원신청서(별첨3 참고) (직인 날인 필수)	필수 제출
②	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	필수 제출
③	기업 사업계획서 또는 제품·서비스 소개서(자유양식)	필수 제출
④	중소기업확인서, (해당 시)벤처기업확인서 각 1부	필수 제출
⑤	투자실적 및 증빙자료(계약서 등)	해당 시 제출

- 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<기업현장 방문행사(팸투어)>

○ (신청기간) 별도 모집공고

○ (신청방법) 공고 + 발굴 및 추천방식 병행

- 1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_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- 2) 발굴 및 추천을 통한 기업 모집

○ (신청서류) 별첨4 참고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①	지원신청서(별첨4 참고) (직인 날인 필수)	필수 제출
②	팸투어 계획서	필수 제출
③	사업계획서(IR자료) *자유 양식	필수 제출
④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 시)	필수 제출
⑤	기타(제품소개서 등)	선택

- 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<수시 투자 상담회>

- (신청기간) 수시모집
- (신청방법) 공고를 통한 기업 모집이 아닌 발굴 및 추천방식으로 운영

□ 지원대상 선정절차

- (수행기관 선정) 사업화재무 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컨설팅, 투자자 매칭 및 연계, 투자계약 지원 등에 특화된 수행기관 선정

<투자유치 컨설팅>

- 사전검토, 현장진단, 선정평가(서면)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
 - (사전검토) 필수 제출 서류 누락, 자격요건 등 확인
 - (현장진단) 컨설팅 목적, 추진의지, 역량, 기대효과 등 진단
 - * 현장진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(선정평가 시, 진단결과 제공)
 - (선정평가) 경영진 역량 및 참여의지, 기술(제품)의 우수성 및 시장성, 사업성, 투자가능성 등 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(서면)

평가항목	점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영진 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 및 참여의지 	2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성(기술(제품)의 독창성,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) 	3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장성 및 사업성(시장규모, 성장성, 사업전략 타당성) ■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 	50점
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선정평가에서 가점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	입력기준
5점	○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('21~'23)	합산하여 최대 10점 이내 부여
3점	○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1~'23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	
1점 최대 2점	○ '23년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우수성과 ○ '22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 ○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	

<기업현장 방문행사(팸투어)>

○ 선정평가(서면) 및 발굴·추천을 통한 지원기업 선정

- (선정평가) 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

평가항목	점수
■ 기업평가(시장성, 사업성, 기술성, 투자유치 가능성 등)	60점
■ 현장방문평가(제품시연 가능성, 제조설비 확인 필요성 등)	40점

- (발굴·추천) 투자가능성, IR 준비도 등을 고려한 기업선정

<수시 투자 상담회>

○ 투자가능성, IR 준비도 등을 고려한 기업선정

□ 추진절차

<투자유치 컨설팅>

구 분	시행주체	세 부 내 용
수행기관 선정 (3월~4월)	전담기관	•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(조달청 입찰)
↓		
수혜기업 모집·선정 및 협약체결(4~5월)	수행기관 (전담기관)	• 수혜기업 선정 - 사전검토, 현장진단, 선정(서면)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
↓		
수행계획 수립(5월)	수행기관	• 기업별 종합진단을 통한 KPI 설정 및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수립 * 수행기관이 검토 승인 전담기관에 사후보고
↓		
컨설팅 등 실시 (5~11월)	수행기관	• 기업별 맞춤 컨설팅 실시 및 수시 보고* * 컨설팅관리기관 기업별 진행현황 보고 • 수시 투자 상담회 및 팸투어 실시
↓		
IR 실시 (8월~9월)	수행기관	• 투자기관 발굴 및 기업별 투자자 매칭 - 투자설명회, 상담회 등
↓		
최종보고회 (12월)	전담기관 (수행기관)	•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- 컨설팅 최종 결과, 만족도 조사결과 및 성과, 우수사례 등 보고(수행기관)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신청,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이지현 선임연구원	02-3460-0372	jihyeon@kimst.re.kr